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정이유

- 파주시 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공사비 30억 이상의 건설 공사 및 30억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등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시공의 적정성·설계의 타당성·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설계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과 대상을 규정(제2조)
- 위원회의 기능은 건설기술법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규정(제5조)
- 설계 등 자문대상 공사를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미만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등으로 규정(제6조)
- 자문 요청시 제출서류의 범위(제7조)
- 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12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심의 및 설계적격 심의로 부실설계,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하며 조문체계 등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 설계자문대상사업을 30억원 이상의 공사로 정하고 있어 그 대상사업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사료되며 참고로 설계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경기도내는 수원, 성남, 광명, 남양주, 안성 등 5개 시·군, 전국은 청주, 경주 등 9개 시·군으로 수원시가 대상사업을 20억 이상 사업으로 강릉시는 10억 이상으로 정하는 등 시·군간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위원회의 위원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대상이 시의회의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및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대학의 조교수급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등 50인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규모, 성격으로 보아 부시장급으로 격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수원시의 경우는 부시장, 강릉시는 건설교통국장 등으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위원의 수도 15인에서 100인까지 각각인 실정임을 참고로 보고 드림.

타시군 조례 비교표

시군별	위 원 장	위 원 수(명)	자문대상규모	근 거
청 주 시	부 시 장	100	미확인	조 례
포 항 시	부 시 장	27	10억원	규 정
동 해 시	건설국장	25	10억원	규 정
강 룡 시	건설교통국장	20	10억원	규 정
수 원 시	부 시 장	100	20억원	조 례
안 성 시	부 시 장	20	10억원	규 칙
성 남 시	부 시 장	100	10억원	조 례
광 명 시	부 시 장	50	30억원	조 례
남양주시	부 시 장	10	미확인	규 정
경 주 시	건설도시국장	15	10억원	규 정
구 미 시	도시건설국장	16	10억원	규 정
군 포 시	부 시 장	50	50억원	조 례